조기취업형계약학과운영규정 5-1-65

규정번호 5-1-65
제정일자 2021.10.25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23조의 9 규정에 의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설치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 및 제1조에 의거하여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이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설치 운영한다.

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또는 폐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설치・운영계획 또는 폐지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사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우리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모집단위별 정원 및 학위 종류
5. 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산업체 및 학생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6.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 및 납부기한, 미납 시 조치사항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9.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보호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10. 학술정보원(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기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주문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실무연수를 위하여 이동수업 및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 및 선발절차는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선발하되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한다.

제7조(모집정원) 계약학과 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칙 제23조의 10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등록) ① 학칙 제23조의 12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별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단, 산업체는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③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④ 2학년 1학기 개시 이후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한다.

제9조(학기 및 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기제로 운영하며 1학년(제1학기, 하계계절학기, 제2학기, 동계계절학기), 2학년(제1학기, 하계계절학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1학점 취득은 15시간 이상 수업을 기본으로 한다.

③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계절제수업 등으로 운영한다.

④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⑤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의 수업을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이 담당한다.

⑥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 성취 등을 통보한다.

제10조(졸업) 학칙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교과목 10학점 이상, 학과별 전공교과목 및 예비대학과정, 마이크로전공과정 등 60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08.08.)

제11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학기제로 설치·운영한다.

② 학칙 제23조의 14 제4항에 따라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으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여야 한다.(개정 2024.7.24.)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A·B·C·D·F급의 분류로 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일 때는 낙제로 한다.

제14조(성적의 취소) 기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15조(휴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설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학과 및 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학과 및 과정이 계속 유지되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복학 시에 해당학과가 계약에 의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계약당사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를 퇴직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부진한 자
3. 산업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4. 산업체와의 설치·운영기간 내에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제17조(운영위원회 및 지원조직) 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심의·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한다.

③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둔다.

제18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19조(회계 관리) 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회계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 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교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제2항)